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회)	

병역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예비역 병의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하는 「병역법」 일부개정(법률 제 19791호, 2023. 10. 31. 공포, 2024. 5. 1. 시행) 및 「병역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(대통령령 제34624호, 2024. 7. 2. 일부개정)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예비역 등의 군사교육 소집 목적에 부사관 임용 자격과 세부 시행 권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.

3. 주요내용

가. 병역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 1, 3, 4 예비역 병의 예비역 부사관 임용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병역법 시행규칙에 반영(안 제77조의 3, 5, 6, 7, 8, 9에 반영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.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.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.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.

병역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

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7조의3(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)

③ 제2항 제3호에 따른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진급 및 부사관 임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
가. 지원서
나. 군경력증명서

제77조의5(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해제)

3.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그 밖에 진급 또는 임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
제77조의6(예비역의 진급 및 임용발령자 명부의 송부)

②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을 진급 및 임용시킨 경우에는 진급 및 임용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

제77조의7(예비역의 진급 및 임용 발령 보류) ① 영 제115조의2, 영

제115조의3에 따른 진급 및 임용대상자가 그 진급 또는 임용 발령 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급 또는 임용 발령을 보류한다.

2. 공무원으로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**진급 또는 임용 발령**이 보류된 사람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, 징계항고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견책 이하로 경감된 경우에는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취소·경감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발령한다.

제77조의8(예비역장교 및 예비역부사관의 검정 등)

②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을 장교로 **임용**하거나 **예비역의 병을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**한 경우에는 장교 및 부사관 **임용자** 명부를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.

제77조의9(예비역 진급자·임용자의 병적관리) ① 병무청장 및 각 군

참모총장은 제77조의6 및 제77조의8제2항에 따라 **진급발령자** 명부 또는 **장교·부사관 임용자** 명부를 받으면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에게, 각 군 참모총장은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.

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**진급발령자** 명부 또는 **장교·부사관 임용자** 명부를 받으면 **진급발령자 및 장교·부사관임용자의 병적**을 정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7조의3(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) ①·② (생략)	제77조의3(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③ ----- -----.
1. <u>진급</u> 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	1. <u>진급 및 부사관 임용</u> ----- -----
가.·나. (생략)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77조의5(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해제) 각 군 참모총장은 제77조의3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군사교육소집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.	제77조의5(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해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그 밖에 <u>진급</u> 또는 <u>장교로 임용하기</u> 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	3. ----- ----- <u>임용</u> ----- ----- -----

제77조의6(예비역의 진급발령자 명부의 송부) ① (생략)

②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을 진급시킨 경우에는 진급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제77조의7(예비역의 진급발령 보류) ① 영 제115조의2에 따른 진급대상자가 그 진급발령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급발령을 보류한다.

1. 2.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진급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, 징계항고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견책 이하로 경감된 경우에는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취소·경감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발령한다.

제77조의8(예비역장교의 검정 등) ① (생략)

제77조의6(예비역의 진급 및 임용발령자 명부의 송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진급 및 임용시킨 경우에는 진급 및 임용발령자 -----.

제77조의7(예비역의 진급 및 임용발령 보류) ① 영 제115조의2, 영 제115조의3-----
진급 및 임용대상자가 그 진급 또는 임용 발령일 ----- 진급 또는 임용 발령을 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진급 또는 임용발령-----

-----.

제77조의8(예비역장교 및 예비역 부사관의 검정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을 장교로 <u>임용한 경우에는 장교임용자</u> 명부를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. 제77조의9(예비역 진급자·임용자의 병적관리) ①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제77조의6 및 제77조의8제2항에 따라 진급발령자 명부 또는 <u>장교임용자</u> 명부를 받으면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에게, 각 군 참모총장은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.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진급발령자 명부 또는 <u>장교임용자</u> 명부를 받으면 진급발령자 및 <u>장교임용자의</u> 병적을 정리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<u>임용하거나 예비역의 병을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한 경우에는 장교 및 부사관 임용자</u> ----. 제77조의9(예비역 진급자·임용자의 병적관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장교·부사관 임용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----- ----- <u>장교·부사관 임용자 명부</u>----- --- <u>장교·부사관임용자의</u> --- -----.
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예비전력정책관실 자원동원과	
연 락 처	(02) 748 - 5224